

청렴韓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근로기준법 제74조 관련 건강보험수가 차등적용 인력 산정기준 변경에 대한 안내 및
협조 요청

1. 보험급여과-5270(2016.9.13.)호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74조 개정(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일부개정)에 따른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변경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적용 인력 산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변경된 내용이 시행일(2025.2.23.)에 맞추어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차등제 적용 인력 등 상근자로 인정되고 있는 의료인력이 상근자의 다른 조건은 충족하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받은 경우, 1일 8시간 근무자로 인정 가능함

* 다만,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질적 수준 제고 등 인력 차등제 및 상근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서는 의료의 질 관리와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한 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장, 대한한 방병원협회장, 대한요양병원협회장, 대한간호협회장, 대한약사회장,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나주병원 장, 국립부곡병원장, 국립춘천병원장, 국립공주병원장, 국립소록도병원장, 국립재활원장, 국립마산병원 장, 국립목포병원장,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 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경기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 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민건강보 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주무관

오소정

행정사무관

이성규

보험급여과장

전결 2025. 2. 19.

정성훈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732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4층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736

팩스번호 044-202-3934

/ osjung98@korea.kr

/ 대한민국 공개